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추가) 공고

2025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 · 안내합니다.

2025. 7. 4.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5. 7. 14.(월) ~ 예산 소진시까지

2. 보급물량 : **승용 약 60대**

※ 사업물량은 차종별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부여 시 검토 과정을 위해 **최소 2일 전에 신청 요망**

※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 (전산자료 및 출력물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불가 및 접수 취소 후 재접수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구매신청내용 변경 불가

※ **잔여대수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현황조회>총괄현황(광양시)**에서 확인 가능하나 실잔여대수는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 잔여대수 = 공고대수 - 접수대수)

3. 지원대수 : 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대

구 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승 용	1대	1대	1대 (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 사업으로 보급)

* 법인·기관 1대 초과분량(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한 개별 접수

4. 지원금액 : **차종별도(붙임 1,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참고)**

※ 환경부 등 지침의 변경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기준 : 차량 출고등록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일 순)

6. 보조금 지원 차량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③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2

보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1. 지원자격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으로 아래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검토 적용
- (개인)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모두 광양시에 두고 있는 사업자
- (법인·기관) 광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를 둔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 확인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광양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용본거지와 대표자 주소가 「광양시」 이어야 함
- ※ 리스·렌트용 구매 시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와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모두 광양시에 거주·등록되어야 요건이 충족됨
- ※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단, 장애의 사유로 만 18세 이상 성년자와 공동명의로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 연령 제한을 미적용)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2.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소급적용**) 개인이 승용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사: 승용차간) 차량을 구매 시(타 지자체 지원 내역 포함)
 - ※ 전국 공통 사항으로, 타 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위반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폐차 환수금 납부시 승용 2년, 화물 2년 미경과시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세부사항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5. 4)을 따르며, 환경부 관련 지침이 개정·변경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따른다.**

3. 보조금 지원 금액

1. 지원금액

(단위:만원)				
대상차종	계	국비	지방비	비고
승용	중·대형	262~1,181	141~686	121~500
	경·소형	848~930	457~500	391~430
	초소형	445	200	245

차종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금액 : 별도 볼임 엑셀 참고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게재

※ 환경부 등 지침의 변경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추가지원

□ 전기 승용

1) 공동명의(중·대형, 소형, 초소형)

- 도내 생산제품은 도비 13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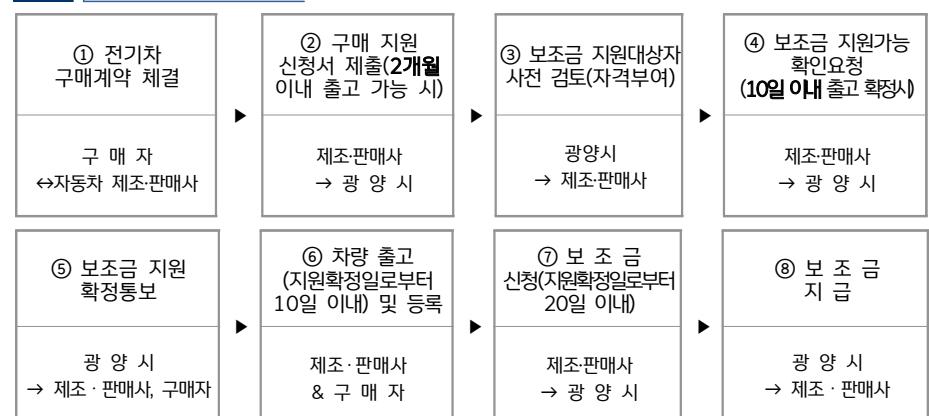
2) 중·대형, 소형

-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택시사업자면허 사본 제출)
 -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 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디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26.12.31.까지)

3) 초소형

- 초소형 전기차 활용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증빙^{**}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활용 등
 - ** 증빙서류(서식5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4. 지원 절차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에서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후 보조금 지급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구매 지원 신청

1. 신청기간 : 2025. 7. 14.(월) ~ 예산 소진까지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30일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차량구매계약서 제외)

구분	개인	법인 등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지원 신청서 [서식1] -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2]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차량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기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지원 신청서 [서식1] -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차량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기입)

3. 신청접수 방법

- ①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후 판매사에서 접수 신청
 - 판매사는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ttps://www.ev.or.kr>)을 통해 접수
 - 방문, 메일, 우편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② 전기차 제작·판매사별 접수 담당자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작성된 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첨부 등록
 - 첨부파일은 필요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첨부파일 사이즈는 5MB를 넘지 않아야 함
- ③ 광양시청 담당자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권한을 따로 부여 받아 사용하므로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음.
- ④ 전기자동차 접수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지원가능 확인요청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접수)이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접수할 수 없음.

6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신청

1.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 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2. (시 담당자)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

- 서류 확인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부여
-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부여 시 검토 과정을 위해 **최소 2일 전에 신청 요망**

3. (제조·판매사)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요청

-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확정 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https://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 실시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 (전산자료 및 출력물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불가 및 접수 취소 후 재접수

4. (시 담당자) 구매보조금 지원자 확정(대상자 선정)

-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구매자 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5. (제조·판매사)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 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출고일은 세금계산서 날짜로 함; 기간내 차량 출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증빙서류 제출)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취소됨
- 보조금 지급신청서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내역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자동차등록증
④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사본)
⑤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세금계산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원본은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조·판매사가 광양시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원본 서류 일괄 제출(방문/우편)

(주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4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친환경차 담당자)

7

보조금 선정대상 의무준수(의무운행)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의하여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광양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중 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판매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표2)**
(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증빙서류 제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표1)**,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

- 광양시 내 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 회수
- 타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지방비(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적용)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함

8

유의사항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보조금 지원 확정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구매신청서 접수 기간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 할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 후 신규로 접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능
- 전기차 신청자가 신청접수 한 날로부터 2개월(60일) 지원가능 확인 요청이 되지 않을 경우 구매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합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출고 등록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가 취소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차량등록증의 최초 사용 본거지는 광양시 관내 주소로 한정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광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7.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광양시 외 타 지자체 주민등록 가족의 공동명의는 불가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가족)외 법인과의 공동명의는 불가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으로 한정

8. 구매신청서 등 관련신청 서류에 하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개인, 법인 등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9. 구매 지원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계약 취소 여부를 광양시에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 시 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연금이나 기초수급 담당자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사용본거지가 광양 외의 주소로 차량 등록, 의무기간 내 전기차 1대 이상 구매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광양시 환경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9

관내 전기차 판매소 현황

보급업체명	자동차 판매점
기 아(3개소)	중마대리점 (중동, ☎ 792-4400, 팩스 793-4404) 신광대리점 (광양읍, ☎ 762-1515, 팩스 762-8222) 동광양지점 (중동, ☎ 791-7450, 팩스 791-0995)
르노삼성(1개소)	광양대리점 (중동, ☎ 792-0201, 팩스 792-1005)
한국GM(1개소)	광양대리점 (중동, ☎ 080-3000-5000, 팩스 0303-3130-5050)
쌍 용(2개소)	광양대리점 (중동, ☎ 791-0071) 서광양영업소 (광양읍, ☎ 761-8900)
현 대(3개소)	중마대리점 (중동, ☎ 794-9800, 팩스 794-6123) 광양지점 (광양읍, ☎ 762-8865, 팩스 762-6825) 동광양지점 (중동, ☎ 793-4720, 팩스 793-1188)

- 불임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 (서식2)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서식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4)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서식5)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서식6) 전기자동차 이전 승인 요청서
- (서식6)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승용 □ 화물)

성명 (법인·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고 예정일자	구매 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우선순위 (해당시)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 생애최초 자랑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구매				
화물경유차 폐차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폐차 미이행(보조금 50만원 차감) <input type="checkbox"/> 폐차 이행(보조금 50만원 추가)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없음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명	담당자		연락처	

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개인)주민등록초본, (법인·기관)사업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택시) 택시면허 사업자등록증 (우선순위) 해당 증빙서류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원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광양시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광양시에 제출]

신청자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명		법인등록번호	
	판매점명		담당자·연락처	
구매자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등록주소지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차량번호		차량등록일	
	구입차종(세부)			
추가 지급	<input type="checkbox"/> 전기택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이하 계층 <input type="checkbox"/> 도내생산제품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input type="checkbox"/> 지역거점사업			
보조금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5년 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제조·판매사)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조·판매사)사업자 등록증 1부. 4.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승용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관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광양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성명	매수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차량 정보			
차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권 이전 사유 :			
매매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8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p>※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포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폐차(사용폐지)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광양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p>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 매도자 : (인) 매수자 : (인)</p> <p>광양시장 귀하</p> <p>첨부서류 : 주민등록 초본 1부, 자동차 등록증 1부</p>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이전 승인 요청서

기존	성명	변경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차량 정보			
차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전 사유 :			
이전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이전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8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p>※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포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폐차(사용폐지), 판매, 이전 시에는 반드시 광양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p>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 (인)</p> <p>광양시장 귀하</p> <p>첨부서류 : 자동차 등록증 1부, 증빙서류</p>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